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30212 취득세, 등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영농조합법인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8. 8. 16.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06,930원, 농어촌특별세 1,170,680원, 등록세 11,706,930원, 지방세 2,165,400원의 각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706,930원, 농어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특별세 1,170,680원, 등록세 11,706,930원, 지방세 2,165,400원의 각 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의 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여 2009. 4. 8.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5. 27. 원고의 이사 B으로부터 [redacted]시 C 임야 6,622㎡ 중 B 명의의 827.75/6,622 지분, [redacted]시 D 임야 6,624㎡ 중 B 명의의 828/6,624 지분, [redacted]시 E 임야 9,947㎡ 중 B 명의의 1,243.375/9,947 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현물출자로 취득하여 2009.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66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0. 5.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영농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단서를 적용해 취득세 11,706,930원, 농어촌특별세 1,178,680원, 등록세 11,706,930원, 지방교육세 2,165,400원(이하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추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15.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현물출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원고는 2017. 9.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부과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12. 각하되었고, 원고는 2018.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인정근거] 갑 제1, 4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여부

구 지방세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0조 제1항은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10. 5. 이 사건 처분을 하고 2011. 10. 6. 이 사건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사무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 F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그 무렵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2) 제소기간 도과여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기본법 제119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고 그 처분에 대하여 곧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한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지도 않고 취소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제기된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넘겨 청구한 부적법한 행정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그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원래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 취소소송이 다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8786 판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1. 10. 6.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7. 9. 1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7. 12. 12. 각하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가 2018.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고,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조세심판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세심판청구는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한 이상 이를 제소기간을 준수하여 제기된 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모두 부적법하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바 없고, 그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송달받은 바도 없다.

원고는 현물출자 계약 해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피고가 그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2016. 10. 5.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누1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처분 등의 송달 여부

2011. 10. 5.자 이 사건 처분이 2011. 10. 6. 원고에게 발송되어 그 무렵 송달된 것으로 추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11.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고유 목적 미사용을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위 과세예고통지서도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현물출자를 해지한 경우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살피건대,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부동산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는 2009. 5. 27. 현물출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에게 그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해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징수권 시효 완성 여부

살피건대, 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중단 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를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기일은 2011. 10. 31.인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2. 14. 원고 소유의 [redacted]시 G 답 4,893㎡에 관하여 체납을 이유로 압류등기를 한 사실이 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등에 대한 징수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정지은

판사 노한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04

별지

관계 법령

▣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6조(농어민관련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⑦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항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된 것, 2011. 1. 1.부터 시행)

부칙<법률 제10221호, 2010. 3. 31.>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